

**연세대학교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 Whale
동아리 등록 심사 기준 안내**

2025. 2.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목 차

1. 동아리와 등록

-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로서의 중앙동아리
-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로서의 국제캠퍼스 동아리

2.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 중앙동아리 재등록
-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3. 구비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 자주 하는 실수와 Tip
- 세부평가 항목 작성 요령

4. 가산점 일람표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가산점 일람표
- 중앙동아리 재등록 가산점 일람표
-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가산점 일람표

동아리와 등록

■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로서의 중앙동아리

- 중앙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로부터 특정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자치기구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총동아리연합회칙에서는 중앙동아리를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심사를 신청하여 통과한 동아리는 준동아리가 될 수 있으며, 준동아리 상태의 중앙동아리는 중앙동아리 재등록 심사를 통해 정동아리로 승격할 기회를 얻습니다.
- 정동아리가 매년 정동아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동아리 재등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로서의 국제캠퍼스 동아리

-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제캠퍼스 Y-Plaza 내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일반등록은 매해 이루어집니다.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1년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 공통 사항

- 구비서류들의 내용은 서로 일관되어야 하며, 내용이 변동되는 오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 제1호.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 제공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설립 목적이 기존 중앙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활동 범위가 기존 중앙동아리와 유사하지 않고 전문성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원진은 회칙상 가능한 직책이어야 하며,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이어야 합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이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 수료생을 의미합니다.

■ 제2호.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는 반드시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합니다. 학칙상 비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 조교수와 부교수, 교수만이 본교의 전임교원입니다.

▷ 강사, 객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경우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합니다.

■ 제3호. 회칙

- 동아리 회칙으로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에 회칙이 공개되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제출 이전에 회칙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들이 회칙이 공개된 창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카페, 동아리방 내 실물 서류 배치 등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든 무방합니다.
- 동아리 운영 권한이 대표자 외의 임원들에게도 분권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음을 증빙하지 않을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제4호.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 2년의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연간 평가를 시행합니다.
- 활동 내용이 동아리 주제와 충실하게 연계되는가를 평가합니다.
- 증빙자료가 보고서에 작성된 활동을 잘 묘사하는가를 평가합니다.
- 활동 참여의 기회가 전체 회원에게 열려 있고 접근성이 좋은가를 평가합니다.
- 활동 내용이 기존 동아리와 유사하지 않은가를 평가합니다.
-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활동의 수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의 경우 상대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5호.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 4호 구비서류에 보고된 활동을 바탕으로 중앙동아리가 되었을 경우의 변경점을 중점에 두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 4호 구비서류와 비교하여 그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 제6호. 최근 2년간 결산안

- 6개월 단위로 누락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인정 · 조건부인정 · 불인정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조건부인정은 0.5건 누락으로 처리합니다.
- 결산증빙자료 부재 시 0점 처리되며, 증빙자료 인정의 기준은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체화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증빙자료를 6-2호로, 거래내역서를 6-3호로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되거나 스캔되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서의 경우 엑셀 파일 등 다운로드하는 자가 조작가능한 양식이 아닌 은행 방문 발급본 또는 PDF 파일 등 조작할 수 없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 내역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10점이 감점됩니다. 결산안의 공개는 제출 전

에 이루어져야 하며, 6-2호 서류에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7호. 동아리 지원금 사용 계획서

- 6개월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평가를 시행합니다.
- 학기당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비에서 보충한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 해당 금액을 전부 사용하는 예산안의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 지출액이 30만원에 정확히 들어맞는 예산안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비에서 보충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 제8호. 총회 회의록

- 동아리 운영과 관련된 주제 제반의 회의가 대상입니다.
- 총회의 주제나 안건은 동아리 운영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무방합니다(예: 대표자 선출, 결산안 인준, 회칙 개정, 활동 계획안 승인 등).
- 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안건지에 회의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형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9호. 전체회원명단

- 회칙상의 요건인 다음 셋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①: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따라서 대학원생, 미래캠퍼스 재적생, 한국어학당 및 외국어학당 학생, 미래교육원 학생, 타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온 교환학생 등은 회칙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함)
- ②: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함
- ③: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각각 50% 이하이어야 함
- 1호 구비서류에 기재된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원 정보는 연세포털서비스 기준으로 작성하며, 오타자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이 아닌 회원이 기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서류의 내용대로 2025년도 2학기 전체회원명단에 등재됩니다.

■ 제10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9호 구비서류와 마찬가지로 회칙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9호 구비서류에 부재하는 회원이 기재된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서류 조작으로 간주합니다.

■ 제11호. 중앙동아리 회원 100명 이상의 지지서명

- 공고에 안내되는 대로 연서판을 제작하고, 총동아리연합회장의 검인을 거친 뒤 실물로 서명을 수합하여야 합니다(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
- 서명 대상은 반드시 본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서명 인원은 중앙동아리의 대표자 28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실물의 스캔본을 제출하며, 실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등록 완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 엑셀 정리본을 11-2호로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명 인원이 본회의 회원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회 회원이 아닌 자로 판명되는 이들은 서명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0명보다 훨씬 넉넉한 인원의 지지서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중앙동아리 대표자 28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훨씬 넉넉히 지지서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중앙동아리 재등록

■ 공통 사항

- 구비서류들의 내용은 서로 일관되어야 하며 내용이 변동되는 오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 제1호. 중앙동아리 재등록 신청서

- 제공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원진은 회칙상 가능한 직책이어야 하며,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이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 수료생을 의미합니다.

■ 제2호.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는 반드시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합니다. 학칙상 비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 조교수와 부교수, 교수만이 본교의 전임교원입니다.

▷ 강사, 객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경우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합니다.

■ 제3호. 회칙

- 동아리 회칙으로서의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에 회칙이 공개되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제출 이전에 회칙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들이 회칙이 공개된 창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카페, 동아리방 내 실물 서류 배치 등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든 무방합니다.
- 동아리 운영 권한이 대표자 외의 임원들에게도 분권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제4호.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 6개월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평가를 시행합니다.
- 활동 내용이 동아리 주제와 충실하게 연계되는가를 평가합니다.
- 증빙자료가 보고서에 작성된 활동을 잘 묘사하는가를 평가합니다.
- 활동 참여의 기회가 전체 회원에게 열려 있고 접근성이 좋은가를 평가합니다.
-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활동의 수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5호. 대표활동계획서

- 동아리를 대표할 만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활동 3가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동아리의 활동 방향과 동일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 각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체계성을 평가합니다.
- 정확히 3개의 활동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작성한 활동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제6호. 최근 1년간 결산안

- 3개월 단위로 누락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인정 · 조건부인정 · 불인정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조건부인정은 0.5건 누락으로 처리합니다.
- 결산증빙자료 부재 시 0점 처리되며, 증빙자료 인정의 기준은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체화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증빙자료를 6-2호로, 거래내역서를 6-3호로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되거나 스캔되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서의 경우 엑셀 파일 등 다운로드하는 자가 조작가능한 양식이 아닌 은행 방문 발급본 또는 PDF 파일 등 조작할 수 없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 내역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10점이 감점됩니다. 결산안의 공개는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6-2호 서류에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8호. 전체회원명단

- 회칙상의 요건인 다음 셋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①: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따라서 대학원생, 미래캠퍼스 재적생, 한국어학당 및 외국어학당 학생, 미래교육원 학생, 타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온 교환학생 등은 회칙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
- ②: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함

- ③: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각각 50% 이하이어야 함
- 1호 구비서류에 기재된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원 정보는 연세포털서비스 기준으로 작성하며, 오타자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이 아닌 회원은 회원수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서류의 내용대로 2025년도 2학기 전체회원명단에 등재됩니다.

■ 제9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8호 구비서류와 마찬가지로 회칙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8호 구비서류에 부재하는 회원이 기재된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서류 조작으로 간주합니다.

□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 공통 사항

- 구비서류들의 내용은 서로 일관되어야 하며 내용이 변동되는 오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 제1호. 국제캠퍼스 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 제공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원진은 회칙상 가능한 직책이어야 하며, 임원진의 50% 이상이 연계된 신촌캠퍼스 중앙동아리의 임원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계된 신촌캠퍼스 중앙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 중의 인원이 임원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제2호. 회칙

- 동아리 회칙으로서의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에 회칙이 공개되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제출 이전에 회칙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들이 회칙이 공개된 창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카페, 동아리방 내 실물 서류 배치 등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든 무방합니다.
- 동아리 운영 권한이 대표자 외의 임원들에게도 분권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 국제캠퍼스에 근거해 활동하는 동아리임을 회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호.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 6개월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평가를 시행합니다.
- 국제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 활동 내용이 동아리 주제와 충실하게 연계되는가를 평가합니다.
- 증빙자료가 보고서에 작성된 활동을 잘 묘사하는가를 평가합니다.
- 활동 참여의 기회가 전체 회원에게 열려 있고 접근성이 좋은가를 평가합니다.
-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활동의 수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4호.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 3호 구비서류에 보고된 활동을 바탕으로 국제캠퍼스에서의 활동을 중점에 두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 3호 구비서류와 비교하여 그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 제5호. 전체회원명단

- 회칙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회칙상 요건: 국제캠퍼스 생활단위 재적생 10명 이상의 회원 명단. 단, 한 단과대의 비율이 50% 이하.
- 1호 구비서류에 기재된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원 정보는 연세포털서비스 기준으로 작성하며, 오타자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이 아닌 회원은 회원수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서류의 내용대로 2025년도 2학기 전체회원명단에 등재됩니다.

▷ 서울캠퍼스 학부 재적생이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 수료생을 의미합니다.

■ 제6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5호 구비서류와 마찬가지로 회칙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5호 구비서류에 부재하는 회원이 기재된 경우 NP로 평가됩니다.
-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서류 조작으로 간주합니다.

구비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 자주 하는 실수와 Tip

■ NP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및 재등록 ·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에 대표자의 자필 서명을 누락하는 실수, 또는 부대표자 등의 회장이 아닌 자가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필 서명을 이미지화해서서, 소위 “누끼따기” 를 하신 뒤 “글 앞으로” 의 배치 방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개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의 경우, 잊지 말고 공개 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칙과 최근 1·2년간 결산안, 대표자의 민주적 선출 사실(중앙동아리 신규등록에 한함), 예산안(중앙동아리 재등록에 한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모든 등록에서는 회칙의 공개 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NP로 처리됩니다. 제출 이전에 회칙이 동아리 내에 공개되어야 하며, 증빙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체회원명단 작성 시에는 회칙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회원수에서 제외될 인원을 고려하여 넉넉히 기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오탈자에 유의하셔야 하며, 인원이 적은 동아리일수록 특정 단과대나 학번(입학년도)의 구성 비율이 50%를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전체회원명단에는 1호 구비서류인 동아리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임원진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진은 당연히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이 아닌 자가 임원진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구비서류는 NP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의 인원은 모두 전체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가 NP로 처리됩니다.
- 신규등록 구비서류 8호 총회 회의록의 경우, 제출된 회의록이 임원회의 등의 것이 아니며 동아리 총회의 회의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제캠퍼스 일반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임원진의 50% 이상이 연계된 신촌캠퍼스 중앙동아리의 임원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구비서류는 NP로 처리됩니다. 연계된 신촌캠퍼스 중앙동아리의 회장, 부회장, 총무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구비서류에 임원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구비서류는 NP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들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중앙동아리 재등록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대표활동계획서

- 대표활동계획서는 중앙동아리 재등록 구비서류의 5호 항목에 해당합니다. 해당 구비서류는 동아리를 대표하는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체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입회원 환영회, MT 등 여러 동아리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활동의 경우 동아리의 특색이 드러나는 내용을 따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평가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표활동계획서는 정확히 3개의 활동만을 요구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작성하신 경우 4번째로 작성된 활동부터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부평가 항목 작성 요령

■ 최근 1·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 양식에 기간 구분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셔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이 특정 기간의 것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시작일로 합니다. 따라서 두 기간에 걸친 활동은 앞쪽 기간에 해당하는 양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활동보고서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활동의 수와 종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활동이 반복되어 이를 압축해 기재하거나, 같은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하거나, 동아리의 특색이나 성격과 상관없는 활동을 지나치게 나열하는 등의 경우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양식을 사용하실 때 명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셀을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합병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자료를 첨부하셔도 무방하며, 가시성 등의 이유로 별개의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상 편의를 위한 양식 변형은 심사와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근 1·2년간 결산안

- 양식에 기간 구분이 있습니다. 각 기간은 3개월(재등록) 또는 6개월(신규등록)씩으로, 이를 확인하셔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 항목을 과하게 압축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결산증빙자료를 하나의 결산 항목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빙자료 양식을 사용하실 때 명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셀을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합병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자료를 첨부하셔도 무방하며, 가시성 등의 이유로 별개의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상 편의를 위한 양식 변형은 심사와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양식 개정안 및 증빙자료 양식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등록 피드백 정책과 관련한 안내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가산점 일람표

■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가산점 일람표

동아리박람회	11점	예비 중앙동아리로서 학내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
		1학기 신촌, 송도 참여: 각 2점 / 2학기 신촌 참여: 3점 / 2학기 송도 참여: 4점
동아리소개집	1점	예비 중앙동아리로서 학우들에게 동아리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
		2학기 동아리소개집 참여: 1점
동아리대표자워크숍	3점	예비 중앙동아리로서 임원진이 동아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평가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참여: 3점
동아리등록	5점	중앙동아리 등록 전부터 동아리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평가
		단과대학 동아리 / 국제캠퍼스 동아리 / 일반동아리: 5점

■ 중앙동아리 재등록 가산점 일람표

동아리박람회	11점	중앙동아리로서 학내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
		1학기 신촌, 송도 참여: 각 2점 / 2학기 신촌 참여: 3점 / 2학기 송도 참여: 4점
동아리소개집	1점	중앙동아리로서 학우들에게 동아리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
		2학기 동아리소개집 참여: 1점
동아리대표자워크숍	6점	중앙동아리로서 임원진이 동아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평가
		제6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참여: 인당 3점, 최대 6점
분과위원회	6점	중앙동아리로서 소속된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 평가
		소속된 분과위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3월 정기회 출석: 대표자 · 부대표자 각 3점
예산안 공개	2점	동아리 내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였는지 평가
		동아리 내에서 예산에 대한 회계내역을 공개한 경우: 2점 *6-2호에 결산안 공개여부와 같은 방식으로 증빙
징계사항	감점	누적된 징계 현황에 따라 감점함
		경고 1회당 -4점 / 주의 1회당 -2점

■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가산점 일람표

동아리박람회	6점	국제캠퍼스 동아리로서 학내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
		1학기 송도 동아리박람회 참여: 2점 / 2학기 송도 동아리박람회 참여: 4점

기획 |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
부총동아리연합회장 장우영
집행위원장 유진

작성 | 특임집행위원(등록사무·혁신담당) 박하성

검토 |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24.09.25)」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23.05.30)」
「2025년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심사평가표」
「2025년도 중앙동아리 재등록 심사평가표」
「2025년도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심사평가표」